



■ 사립초등학교(이하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환영 논평(2016. 3. 3.)

## “사립초 영어교육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영혼초 재학생·학부모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 ▲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 함을 밝혀.
- ▲ 서울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이번 헌재 판결을 반영해,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실태를 바로 잡는지 지켜볼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등 영어교육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사립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첨부자료 2 참조)** 그러자 교육당국이 사립초에 대해 1-2학년 영어수업 및 영어몰입교육 중단 조치를 취하였고, 사립초들이 이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이번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그간의 경위와 헌재의 판결 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 사립초, 연간 영어 수업시수 공립초의 3.9배, 영어수업 금지된 초 1·2학년에도 215.7시간이나 실시해

사립초는 교육과정 운영상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수업을 비롯해 3-6학년 정규수업시수 초과 운영, 외국 교과서 사용 등 불법적 영어교육을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13년,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립초의 영어교과 연간 평균 시수는 223.5시간으로 공립초의 3.9배였고, 교육과정상 금지된 초 1, 2학년만 따로 계산할 경우 연간 평균 215.7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80%(32곳)의 학교가 국정·검정·인정 도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를 활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불법 영어교육에 대해 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초·중등교육과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수업을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촌초, 영훈초 등 일부 사립초는 영어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성북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에 그치지 않고 “국내 국제학교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데 사립초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12월,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초등 1-2학년의 정규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하고, 3-6학년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하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1 참조](#))

■ **헌재 기각 결정 주요 이유 1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교육부장관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과정으로서, 교육을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어렵고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의 영어 배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교과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 조항에서 초등학교의 교과를 구체적으로 예시함과 더불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추가로 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각 학년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내용
구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u>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u>

	<p>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 <u>학교의 교과(教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시행령 제43조(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u>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u></p> <p>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p> <p>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p> <p>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p>

■ 현재 기각 결정 주요 이유 2 :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현재는 영어교육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학부모와 재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이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처가 결정한 것이기에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판결은 과도한 외국어(영어) 교육이 영유아~초등 저학년 아동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는 사립학교에 그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지, 이를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

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 고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현재 기각 결정 주요 이유 3 : “사립초 재학생과 학부모는 불법적 행태를 신뢰해 왔을 뿐이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내린 2012년 고시 중 초등학생 영어교육 제한 부분은 이미 2007년부터 제정·시행되었던 ‘초·중등 교육과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한 영어교육을 계속 해왔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이것을 신뢰하고 입학(2008년~2013년 입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립초에서 불법적으로 해왔던 것을 신뢰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이를 보호해야 할 정당한 법적 신뢰라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현재 기각 결정 주요 이유 4 : “국제학교와 사립초의 영어교육 차이는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국제학교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을 볼 때 영어교육 제한은 평등권 침해”라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제학교 또는 영어특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를 두지 않는 시설로 현행 법령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일반 초등학교와는 설립목적,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교육 여부와 정도에 차이가 있어도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현재의 최종 판결까지도 무시한 사립초의 불법적 영어교육 반드시 근절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2015년 11월에도 서울 소재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을 모니터링 한 결과, 서울시내 사립초 20곳에서 여전히 ‘의무 방과후 영어수업’, ‘신입생 영어 레벨 테스트’, ‘1-2학년 대상의 영어행사’ 등을 실시, 불법 영어교육이 뿌리 뽑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첨부자료3 참조)** 이번 현재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은 아동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단체는 앞으로도 사립초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특히 서울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해 엄중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나아가 과도한 영어교육을 조장하는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교육환경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최현주 연구원(02-797-4044. 내선 502), 양세원 변호사(02-797-4044. 내선 511)